

# 예산총칙

2024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분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계              | 616,518,000 | 18,495,540 |
| 일반회계            | 583,932,000 | 17,517,960 |
| 특별회계            | 32,586,000  | 977,580    |
|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 | 28,410,000  | 852,300    |
|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 | 11,138,000  | 334,140    |
|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| 17,272,000  | 518,160  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| 4,176,000   | 125,280   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  | 801,000     | 24,030     |
|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   | 151,000     | 4,530      |
|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     | 427,000     | 12,810     |
| 주택사업특별회계        | 716,000     | 21,480     |
|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   | 1,369,000   | 41,070     |
| 치수사업특별회계        | 350,000     | 10,500    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362,000     | 10,860 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당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 해당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837,349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8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